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2. 9.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호
----------	------

제출연월일 : 2026. 2. 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산림공원과장

1. 제안이유

-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도시숲 관련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 변경에 맞추어 조례명을 정비하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 및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명칭을 정비함
- 나.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다.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추진 시 협의 절차와 식재 및 관리시설물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마. 비용부담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바. 가로수 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자료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2026. 1. 13. ~ 2026. 2. 2. (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산림휴양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논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숲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획에 따른 사항

제9조(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및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한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별로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규모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한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3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태롭고 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비용의 산정은 시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하자책임담보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또는 조성·관리 시설물 등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 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잦은 교통사고 발생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4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유지) 가로수 관리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산림공원과장	김 영 선
안	공원관리팀장	김 두 환
자	담 당 자	김 민 경 (746-6166)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9조제1,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40미터이상) 또는 보도폭 10미터이상	병렬다층식	교목이 2열이상 식재되고 하단부에 관목 혹은 1·2·다년초 초화류 식재
② 대로(25미터이상 ~ 40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미만	병렬식	교목만 2열 이상 식재
③ 중로(12미터이상 ~ 25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미만	다층식	교목 하단부에 관목 혹은 1·2·다년초 초화류 식재
④ 소로(12미터 미만) 또는 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교목만 1열로 식재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9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고
① 광로(40미터이상)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 근원지름 14센티미터이상	
② 대로(25미터이상 ~ 40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	
③ 중로(12미터이상 ~ 25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센티미터 이상, 근원지름 10센티미터 이상	
④ 소로(12미터 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센티미터 이상, 근원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고
① 광로(40미터이상)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② 대로(25미터이상 ~ 40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 10미터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12미터이상 ~ 25미터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 7미터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12미터 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1조제7항 관련)

<p>△피해발생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 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p>△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시장의 지시 위반 시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 조치 나. 시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시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5]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10만원 ~ 50만원 미만	2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0,000원	
100만원 이상	50,000원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및 물품	
2. 비료 주기	비료 지원	
3. 생육 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장비 및 물품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 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산림공원과장 김 영 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

(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1조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공익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의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어진 수목을 말한다.
2. 삭제
3. “메워심기”라 함은 같은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지치기”라 함은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의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가슴높이지름”이라 함은 지표면에서 1.2미터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에서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합이 70퍼센트 가 당해수목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가장 굵은 줄기의 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6. “근원지름”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교목”이라 함은 키 큰 나무를 말한다.
8. “관목”이라 함은 키 작은 나무를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 논산시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별표 1과 같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관리청)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에 따라 논산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비용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흘릴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종의 선정) ① 논산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왕벚나무

2. 은행나무

3. 이팝나무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으로 논산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

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식재기준) ① 논산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논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논산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병해충방제) 관리청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태롭고 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4조(신고 등) ① 관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5조(점검 등) ① 가로수 관리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부서는 별표 8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① 가로수 관리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부서는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유지) 가로수 관리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